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7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외 5명(정순옥, 김정희, 도하석, 장호섭, 이진환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9. 17.)

2. 개정이유

-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, 구청장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와 행정 간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구성 등(안 제17조)
- 대표회장의 직무 등(안 제18조)
- 협의회의 운영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6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9. 3. ~ 9. 15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민·관 거버넌스 기구인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최근 달서구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“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 달서”를 비전으로 하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」을 수립하였음.
-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·경제·사회 전반의 다양한 계층 참여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제1항에 구성위원 정원을 “30명 이내”에서 “100명 이내”로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7조제2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 간 협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회장 1명 운영체제를 공동회장 체제로 전환하여 당연직 공동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.
-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, 교육홍보 등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